

동두천시 애향장학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 안	4-62
번 호	

제출연월일 : 2003. 3.

제 출 자 : 동두천시장

1. 제안이유

- 2002. 12. 23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애향장학기금업무가 총무과에서 체육청소년과로 이관됨에 따른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위원회의 당연직위원 및 간사, 회계관계공무원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

2. 주요골자

- 가. 위원회 당연직위원을 체육청소년과장으로 함 (안 제10조제4항제1호)
- 나. 위원회 간사를 교육지원담당으로 함 (안 제13조제2항)
- 다. 기금운용관을 체육청소년과장으로, 기금출납원을 교육지원담당으로 함 (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)

동두천시조례 제 호

동두천시애향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

동두천시애향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4항제1호중 “총무과장”을 “체육청소년과장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2항중 “시정담당”을 “교육지원담당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3항중 “제출하여 심의·의결을 받아야 한다”를 “제출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기금운용관 : 체육청소년과장
2. 기금출납원 : 교육지원담당

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 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①~④ (생략) 1. 기획감사실장, <u>총무과장</u> (당연직) 2.~3.(생략) ⑤(생략)	제10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~④(현행과 같음) 1.-----, <u>체육청소년과장</u> ----- 2.~3. (현행과 같음) ⑤(현행과 같음)
제13조(간사 및 수당) ①(생략)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사무를 처리하며, <u>시정담당</u> 이 된다. ③(생략)	제13조(간사 및 수당) ①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교육지원담당</u> ----- ③(현행과 같음)
제14조(기금운용계획)①~②(생략)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<u>제출하여 심의·의결을 받아야 한다.</u>	제14조(기금운용계획)①~②(현행과 같음) ③----- ----- - <u>제출하여야 한다.</u>
제15조(회계공무원) ①(생략) 1. <u>기금운용관 : 총무과장</u> 2. <u>기금출납원 : 시정담당</u> ②(생략)	제15조(회계공무원) ①(현행과 같음) 1. <u>기금운용관 : 체육청소년과장</u> 2. <u>기금출납원 : 교육지원담당</u> ②(현행과 같음)
제16조(기금의 결산)①~②(생략)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·의결을 받아야 한다.	제16조(기금의 결산)①~②(현행과 같음)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 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